



입학전형 회피·제척 운영 규정

제정일	2020. 9. 1
개정일	
개정차수	차
담당부서	입학홍보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입학전형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피·제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이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말한다.
2.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란 평가위원, 감독위원, 진행위원 등 입학전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회피’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이하 “응시생”이라 한다)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을 말한다.
4. ‘제척(배제)’이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등을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5. ‘특수한 관계’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2와 본 규정 제 4조에서 정하는 응시생과의 관계를 말한다.

제 3조 (기본원칙) ① 본교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노력한다.

- ② 본교는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회피·제척을 실시한다.
- ③ 본교는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여 부정적인 개입을 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
- ④ 본교는 회피·제척에 대한 사항을 입학전형 실시 전에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공지하고 입학전형을 진행한다.
- ⑤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는 입학전형 실시 전 본인의 회피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입학전형 회피 자진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학 입학전형 업무 수행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4조 (대상) ① 대학입학전형 회피 및 제척 대상 적용 범위는 서류평가, 면접고사, 실기고사, 기타 모든 입학전형에 관련하는 내·외부 입시업무 참여자로 한다.

② ‘회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조)인 경우
2.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3.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4. 그 밖에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자(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의 학연, 지연, 종교 등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가 지원한 경우

③ ‘제척(배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및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조)인 경우

2. 회피 자진신고를 받은 내용 중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조 (운영방법 및 시기) 회피·제척은 자진신고(회피), 시스템 검증(제척), 재검증, 사후검증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운영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피 대상자 자진신고 : 본교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전 자진신고(회피) 사항을 안내하고, 회피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는 신고 기간 중 ‘대학입학전형 회피 자진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학 입학전형 업무 수행 서약서’ 를 입학홍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척 대상자 시스템 검증 : 본교는 원서접수 이후 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등 대학 자체 시스템 및 서류검토를 통해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와 응시생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 입학 관련 업무에서 제척(배제)할 수 있다.

3. 재검증 : 본교는 회피·제척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내·외부 참여자가 있는지 재검증하여야 한다.

4. 사후검증 : 해당 연도의 모든 입학전형 종료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인사현황자료, 자녀 장학금 및 부양가족 수당 신청내역 조회,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감사 등을 통해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6조 (대상자 처리 및 관리) ① 본교는 회피·제척과 관련된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입학전형 실시 이전에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본교는 매 학년도의 회피·제척 운영 결과를 자체 보관 및 관리하여 입학전형 관리의 공정성이 검증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피·제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미동의자 : 해당 학년도 모든 입학관련 업무 참여 제척(배제)

2. 회피(자진신고) 및 시스템 검증에 따른 제척(배제) 대상자 : 해당 응시생이 지원한 모집시기의 입학전형별 선발 업무 참여 제한

④ 회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전형에 참여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입학전형 업무에서 제외시킨다.

제 7조 (위반자 조치) 입학전형관리위원장은 내·외부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신고하고, 위반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편의·향응·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를 한 경우

3. 회피 대상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자 평가에 참여한 경우

4. 기타 입학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 8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